

- 2025년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 -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

광주광역시에서는 고용노동부 「지역형플러스 일자리 사업」의 일환으로, 「2025년도 광주지역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5년 3월 24일

광주광역시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 목적 :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 사업은 뿌리산업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 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지원하고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
나. 지원 대상

(기 업) 광주광역시 소재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
- 뿌리산업법에 따른 14대 뿌리산업 해당기업

※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6대 산업외 사출프레스, 정밀가공, 적층제조, 산업용필름 및 지류공정, 로봇, 센서,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, 엔지니어링 설계 포함 14대 산업

- 뿌리기업 확인서,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확인서 발급기업

(근로자) 상기 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(채용예정자 포함)

다. 지원기간 : '25. 3. 24. ~ '25. 12. 31.(예산소진시까지, 선착순)

라. 세부사업별 지원내용

세부사업	지원내용
① 일자리 도약장려금	- 뿌리산업 대상 만 35세~49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- 1인당 연 최대 360만원 (월 6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)
② 일자리 안착지원금	- 뿌리산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(만18세 이상 49세 이하)에게 3,6개월 근속시 지원금 지급 - 1인 3, 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(연 최대 200만원)
③ 공동이용시설 개선	- 뿌리산업 기업 대상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- 1개사 당 최대 900만원(자부담 10%이상)
④ 주거비(월세) 지원	- 뿌리산업 기업 근무를 위해 월세 계약한 근로자에게 주거비(월세) 지원 - 1인 연 최대 180만원 (월 3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) ※ 신규입사자 우선지원
⑤ 건강검진비 지원	- 뿌리산업 기업 근로자 중 건강검진 실시한 자에게 검진비 지급 - 1인당 30만원 범위내 실비지급 ※ 신규입사자 우선지원

2. 세부사업별 사업내용

① 일자리 도약 장려금

○ 지원대상 :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

- 2025. 3. 24.(공고일) ~ 8. 31. 기간 내 채용한 만 35~49세 이하 대상자
-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 - ※ 취업중인 자 :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,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,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
 - 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-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 -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
 - (임금수준)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

○ 지원인원 : 50명 (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, 기업당 최대 5명)

○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

○ 지원내용 : 공고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월 60만원 (최대 360만원)

※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(이월 불가)되며, 참여 시기에 따라 6개월분 전액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

② 일자리 안착 지원금

○ 지원대상 :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

- 2025. 3. 24.(공고일) ~ 8. 31. 기간 내 취업한 만 18~49세 이하 대상자
-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 - ※ 취업중인 자 :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,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,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
 - 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-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 - (근속기간)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여 재직 중인 자
 -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

○ 지원인원 : 75명

○ 지원기간 : 취업일로부터 최대 6개월

○ 지원내용 : 취업일 기준 3, 6개월 차 근속 시마다 100만원 (최대 200만원)

※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(이월 불가)되며, 참여 시기에 따라 6개월분 전액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

③ 공동이용시설 개선
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명 이상의 신규 취업자를 채용한 기업

○ 지원규모 : 14개사

○ 지원내용 :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복지편의시설 개·보수 비용 지원

구 분	내 용
시설 개보수	· 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, 자체 소방 시설 설치 및 개보수, 화상회의실, 사내 교육장 설치(공사비) · 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장치 설치, LED조명 설치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, 노후 전기 배선 교체(작업공간만 해당, 사무실 제외),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, 컨베이어 작업대
물품 구입	· 지원 불가

○ 지원수준 : 기업당 최대 900만원 (자부담금 10% 필수)

채용인원	1명	2명 이상
지원 한도	450만원	900만원

※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, 채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

④ 주거비(월세) 지원

- 지원대상 : 광주 지역 소재 뿌리기업 재직근로자 및 신규채용 근로자
- 지원인원 : 50명 (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, 기업당 최대 5명)
- 지원내용 : 대상기업 근무를 위해 월세 계약한 근로자에게 주거비(월세) 지원
- 지원기간 : 신청월 익월분부터 최대 6개월
- 지원수준 :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(최대 180만원)

※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(이월 불가)되며, 참여 시기에 따라 6개월분 전액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

○ 기타사항

- 월세 주택은 광주광역시 소재여야 하며,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함
- 임차기숙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해야 하며, 임차계약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체결해야 하고, 본인(지원대상기업·대표·주주·소속 임직원) 및 친인척이 소유한 건물은 제외함
- 임차기숙사, 월세 주택은 아파트, 빌라 등 공공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근로자가 거주가능한 형태여야 함

⑤ 건강검진비 지원

- 지원대상 : 광주 지역 소재 뿌리기업 재직근로자 및 신규채용 근로자
- 지원인원 : 200명 (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, 기업당 최대 10명)
- 지원내용 : 뿌리기업 재직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
- 지원수준 : 1인 3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

○ 기타사항
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진 비용에 한해서만 지원하며, 지원금은 ① 개인 환급 방식 또는 ② 기업 정산 방식 적용 가능
 - ① 개인 환급 방식 : 지원대상자가 개인 지출을 통해 검진비를 결제한 경우, 재직 중인 기업의 사업주 확인서 제출 후 개인에게 지급
 - ② 기업 정산 방식 : 재직 중인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검진비를 결제한 경우, 해당 기업에 지급
- 미용·성형·다이어트 관련 검진 및 기타 비의료 목적의 검진은 지원 불가하며, 허위 영수증 제출 및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

3. 신청 및 지원절차

가. 사업신청 방법 : 광주광역시(gwangju.go.kr) 누리집 고시·공고/입법예고 메뉴 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(gjef.or.kr) 기업지원 메뉴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, 지원신청서 이메일(gjef_plus@naver.com) 접수

나. 지원절차

참여 신청서 제출	자격심사 및 선정·통보	(공동이용시설 개선) 선정평가 및 내부심의	지원금 신청	지원금 지급
기업, 근로자 → 수행기관	수행기관 → 기업, 근로자	기업 ↔ 수행기관	기업, 근로자 → 수행기관	수행기관 → 기업, 근로자
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제출	①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② 선정결과 개별 통보 ③ (기업) 지원 협약 체결 (최초 1회)	공동이용시설 개선 선정평가 실시 (현장실사 포함)	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	① 대상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② 지원금 지급

4. 신청(제출) 서류

① 일자리 도약 장려금

순번	목록	구분	부수
1	· 사업 참여 신청시		
①	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	필수	1부
②	사업주 확인서	필수	1부
③	사업자등록증	필수	1부
④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	필수	1부
⑤	고용보험 완납증명서(참여 신청월 발급본)	필수	1부
⑥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채용일 직전월 발급본)	필수	각 1부
⑦	사업주(대표이사)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3개월 이내 발급본)	필수	1부
⑧	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(또는 뿌리기업 확인서)	필수	1부
2	· 채용자 명단 제출시		
①	정규직 채용(전환)자 명단 제출서	필수	각 1부
②	사업주 확인서	필수	1부
③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근로자용)	필수	각 1부
④	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	필수	각 1부
⑤	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(근로자용, 채용일 이후 발급본)	필수	각 1부
3	· 지원금 신청시		
①	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	필수	1부
②	임금지급 증빙자료(급여대장, 이체확인증 등)	필수	1부
③	기업 명의 통장 사본(최초 1회차 신청시)	필수	각 1부
④	사업주 확인서	해당 시	1부
⑤	고용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월 발급본)	필수	1부
⑥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매 신청시)	해당 시	1부

② 일자리 안착 지원금

순번	목 록	구 분	부 수
1	· 사업 참여 신청시		
①	일자리 안착 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	필수	1부
②	일자리 안착 지원금 참여자 확인서	필수	1부
③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	필수	1부
④	근로계약서 사본	필수	1부
⑤	사업자등록증	필수	1부
⑥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채용일 직전월 발급본)	필수	각 1부
⑦	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(또는 뿌리기업 확인서)	필수	1부
2	· 지원금 신청시		
①	일자리 안착 지원금 지급 신청서	필수	1부
②	재직증명서	필수	1부
③	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	필수	1부
④	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	필수	각 1부
⑤	본인 명의 통장 사본	해당 시	1부

③ 공동이용시설 개선

순번	목 록	구 분	부 수
1	· 사업 참여 신청시		
①	공동이용시설 개선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	필수	각 1부
②	신규 채용 현황	필수	1부
③	기업 협약사항	필수	1부
④	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	필수	각 1부
⑤	신규채용 고용실적 증빙서류(근로계약서 등)	필수	각 1부
⑥	견적서 및 관련 증빙 서류	필수	각 1부
⑦	사업자 등록증	필수	1부
⑧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채용일 이후 발급본)	필수	1부
⑨	고용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월 발급본)	필수	1부
⑩	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(또는 뿌리기업 확인서)	필수	1부
⑪	그 외 기타서류	해당 시	각 1부
2	· 지원금 신청시		
①	지원금 지급 신청 및 결과보고서	필수	각 1부
②	지출 관련 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)	필수	각 1부
③	거래내역 확인서(공사내역서, 세부내역서 등)	필수	각 1부
④	입금(이체·송금) 확인증	필수	각 1부
⑤	기업 명의 통장 사본	필수	1부
⑥	그 외 기타서류	해당 시	1부

④ 주거비(월세) 지원

순 번	목 록	구 분	부 수
1	· 사업 참여 신청서		
①	주거비(월세)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	필 수	1부
②	사업주 확인서	필 수	1부
③	주거비(월세) 지원사업 대상자 근로자 명부	필 수	1부
④	사업자등록증	필 수	1부
⑤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	필 수	1부
⑥	고용보험 완납증명서 (참여 신청월 발급본)	필 수	1부
⑦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신청일 직전월 발급본)	필 수	1부
⑧	사업주(대표이사)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3개월 이내 발급본)	필 수	1부
⑨	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(또는 뿌리기업 확인서)	필 수	1부
2	· 지원금 신청서		
①	주거비(월세)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	필 수	각 1부
②	주거비(월세) 납입 확인 서류 (통장 또는 이체내역서)	필 수	각 1부
③	임금지급 증빙자료 (급여대장, 입금내역 등)	필 수	1부
④	근로자 통장사본 (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)	필 수	각 1부
⑤	주소지가 기재된 근로자 거주 여부 확인서류 (전입신고 내역, 공과금 청구서 등)	필 수	각 1부
3	· 퇴사 및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		
①	퇴사자 명단제출서	필 수	1부
②	사직서 (필요시)	필 수	1부
③	중단사유서 (필요시)	필 수	각 1부

⑤ 건강검진비 지원

순 번	목 록	구 분	부 수
1	· 사업 참여 신청서		
①	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	필 수	1부
②	사업주 확인서	필 수	1부
③	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대상자 근로자 명부	필 수	1부
④	사업자등록증	필 수	1부
⑤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	필 수	1부
⑥	고용보험 완납증명서 (참여 신청월 발급본)	필 수	1부
⑦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신청월 발급본)	필 수	1부
⑧	사업주(대표이사)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3개월 이내 발급본)	필 수	1부
⑨	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(또는 뿌리기업 확인서)	필 수	1부
2	· 지원금 신청서		
①	건강검진비 지원사업 검진비 지급 신청서	필 수	각 1부
②	건강검진비 납부 확인 서류 (영수증 및 결제내역)	필 수	각 1부
③	건강검진 사실 확인서류 (개인정보를 제외한 건강검진 서류, 관련 확인서 등)	필 수	1부
④	사업자 통장사본(또는 지원대상자 통장사본)	필 수	각 1부

5. 기타 유의사항

가. 지원 제외 기업
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
 -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
-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
-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(중복지원 제한)
- 기업에서 대상자를 파견·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
- 해외 법인의 국내 기업 및 지사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등
-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
- 동일사업주/사업장 간의 3개월 이내 이직으로 인한 지원금은 지급 불가
-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
- 참여기업이 신규 채용 후 인위적 감원이(고용조정 이직에 해당) 발생했을 경우 감원 발생한 월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됨

나. 지원 제외 근로자

- 채용일 기준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
-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
-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
-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(사업주 단위)에 재취업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※ 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다. 기타사항

-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,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(gjef.or.kr)를 통해 각 세부사업별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
-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사업유형별 운영지침을 따름

6. 접수 및 문의처

가. 접수기간 : 2025. 3. 24.(월) ~ 예산 소진 시 (선착순 모집)

나.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

다. 문 의 처

기관명	담당자명	연락처	이메일
광주경영자총협회 일자리사업부	노혜연	062-716-3503	gjef_plus@naver.com
	김수란	062-716-3504	

라. 별첨

- 사업 신청 서식
- 뿌리기업 인정분류 코드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 현황